

---

#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

2018. 02. 28.



한강유역환경청

# 목 차

I. 화학물질관리법(최근 개정사항) ..... 1

※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33

# I. 화학물질관리법

## (최근 개정사항)

# 1. 법 제2조(정의)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금지물질)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 [환경부고시 제2018-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2017.00.00., 일부개정]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시행규칙 별표 10]
  - (허가물질) 유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 환경부장관이 고시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 (**취급**)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__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__ 또한 같다.</p> <p>1. ~ 7.</p>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__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__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li> <li>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li> <li>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li> <li>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li> </ol> <p>&lt; 신설 &gt;</p> <p>② __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 __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④ __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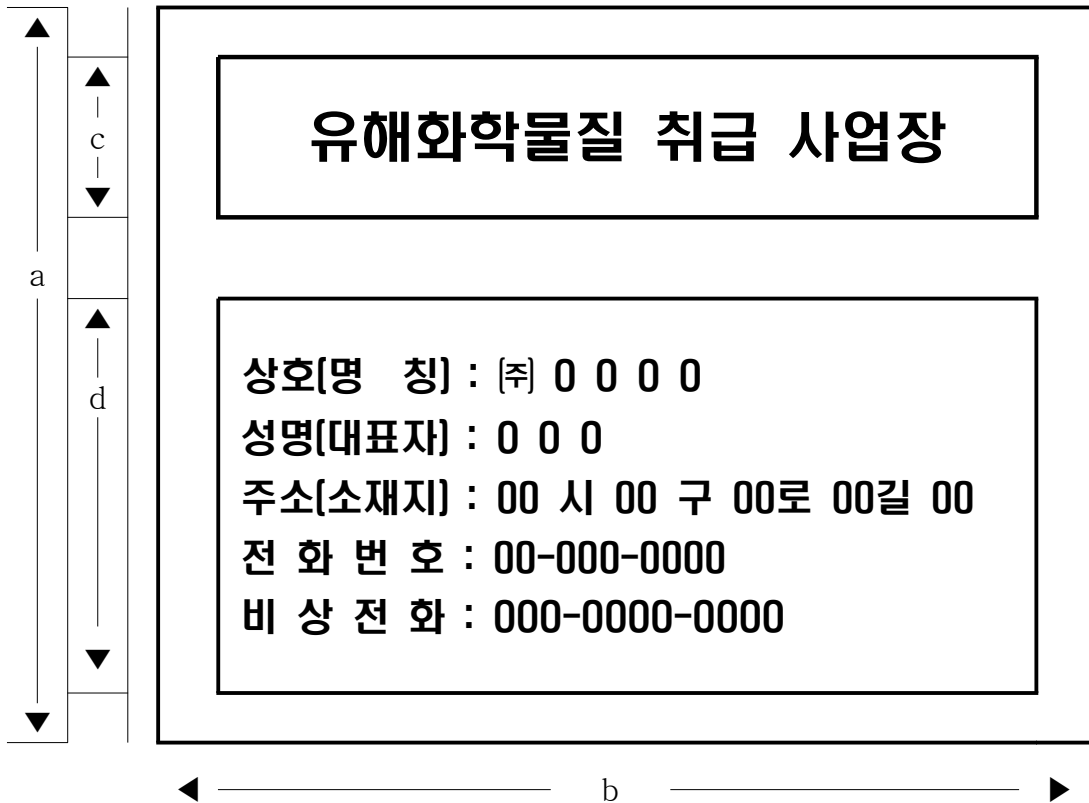
1.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다. 글자크기, 라. 색상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및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출입구, 건물 외벽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소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 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  $c=(1/4)a$ ,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상호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량기준 이상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한정한다.

### 3.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p> <p>③ .....</p> <p>④ .....</p> <p>⑤ .....</p>	<p>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p> <p>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와 함께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lt; 개정 &gt;</p>

■ **관련고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04호, 2017.5.30. 시행]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2015.1.1. 시행]

## 4.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법		시행규칙
<p>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p> <p>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p> <p>② .....</p> <p>③ .....</p> <p>④ .....</p> <p>⑤ .....</p> <p>⑥ .....</p>		<p>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lt;신설 2017.5.30. 시행 2018.1.1.&gt;</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p> <p>① ~ ⑦ (현행과 같음)</p>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 시행]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6호, 2017.6.7. 시행]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2015.1.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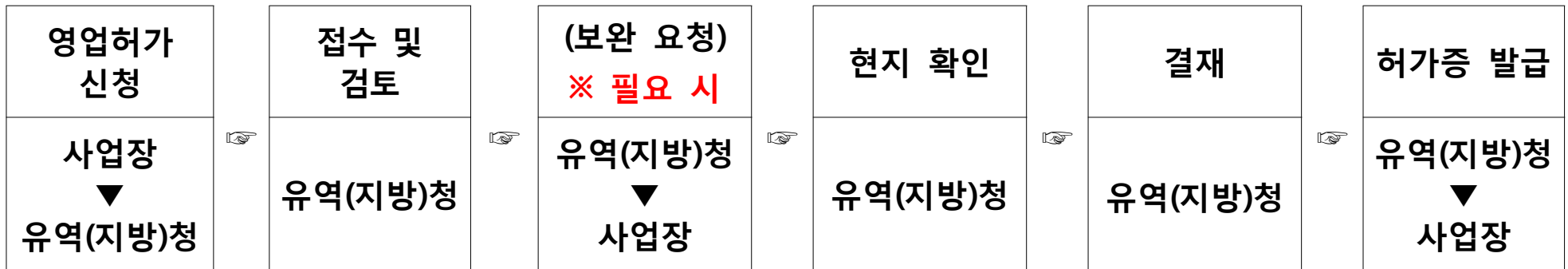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
  - ※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
  - ※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6.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법 제28조

### ● 허가 절차(규칙 제27조)



※ 검토 단계에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 구비서류(규칙 제27조)

- 적합 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취급예정량(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시행규칙 별표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운반업인 경우)
- 결격사유 조회관련 서류

## 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추가(시행 2017.5.30.)

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증가)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시범생산용인 경우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 5.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규칙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li> <li>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li> <li>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u>환경부령으로 정한 자</u></li> </ol>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li> <li>2. 「수도법」__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__ <b>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b>(유독물질 중 <b>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b>)을 사용하는 자. 「환경정책기본법」__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__ <b>연간 60톤 이하로</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_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b>연간 240톤 이하로</b> 한다.</li> <li>3. 「수도법」__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b>밖의</b> 사업장에서 <b>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b>(제한물질 중 <b>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b>)을 사용하는 자</li> <li>4. <b>사고대비물질</b>(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b>장외영향평가서</b>(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b>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b>.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b>제외</b>한다.</li> </ol>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2015.12.29. 시행]

8.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2017. 12. 28 시행

법	규칙 제30조의2 : 신설
<p><b>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b></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li> <li>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lt;본조신설 2016.12.27.&gt;</p>	<p><b>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b></p> <p>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li> <li>「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li> <li>「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li> </ol>

법	규칙 제31조의2 : 신설
<p>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임무)</p> <p>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li> <li>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lt;본조신설 2016.12.27.&gt;</p>	<p>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p> <p>①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 판매장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게시</li> <li>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li> </ol>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시약 정보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b>시약 정보 요약서</b>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시약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판매업 주소		
판매업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용도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관·저장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외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	규칙 제31조의3 : 신설
<p><b>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b></p> <p>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lt;본조신설 2016.12.27.&gt;</p>	<p><b>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b></p> <p>①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시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li> <li>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li> </ol> <p>② ~ ⑦</p>

## 규칙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 : 신설

- ①.....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⑤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원본**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약 판매업 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 시약 판매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저장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l	
	④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 <sup>3</sup>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 <sup>3</sup>
	⑥ 종업원 수	명	⑦ 사업장 면적	m <sup>2</sup>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m <sup>2</sup> ) 및 용량(m <sup>3</sup> ),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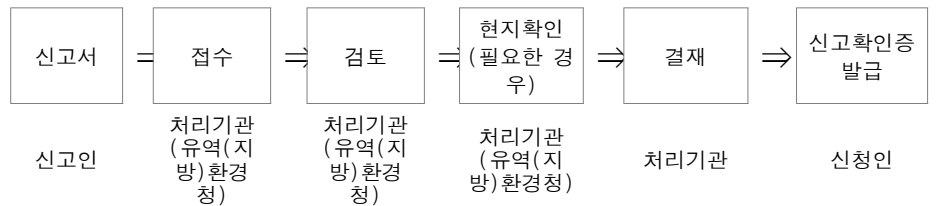
### 작성방법

- ②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앞쪽)

신고번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l			
보관·저장 시설능력	또는		톤 m <sup>3</sup>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 <sup>3</sup>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 <sup>2</sup>		
취급품목 현황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l)		비고	
				월간	연간		
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확인방법 >**

- 시약은 제품이나 포장지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
- 국내에서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이 정해져 시약특급, 시약1급, 특수시약으로 분류
- 해당제품의 카달로그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서 시약임을 확인
- 시약과 일반 테스트 검사용 화학물질(샘플)은 사용용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

210mm × 297mm [백상지 120g/m<sup>2</sup>]

신고번호  
제 호

##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11.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 2017. 12. 28 시행

법		규칙
<p>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p> <p>①.....</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6.12.27., 시행 2017. 12. 28 &gt;</p> <p>③.....</p>		<p>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p> <p>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p> <p>① ---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려는자→)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폐업 또는 휴업→) 폐업, 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10일전에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을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긴급가동중단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긴급하게 가동 중단한 경우에 한한다)</p> <p>&lt; 개정, 2017. 12. 28 &gt;</p> <p>②.....</p>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폐업  
[ ] 휴업  
[ ] **가동중단**  
[ ]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	-----	-----	------	----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 고 사 항	영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폐업, 가동중단 사유			
	휴·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 폐업·[ ] 휴업·[ ] 가동중단·[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조치결과서 4. 긴급가동중단사유서(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긴급하게 가동 중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12.

##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44조(화학사고 현장대응)</p> <p>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p> <p>① 제44조에 따른 <b>현장수습조정관</b>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b>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b>(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b>즉시</b>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b>가동을 중지</b>하여야 하고, <b>환경부장관</b>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b>해제할 때까지</b>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b>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b>.</p> <p>③ 가동중지<b>명령</b>과 가동중지명령 <b>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b> 등에 필요한 사항은 <b>환경부령</b>으로 정한다.</p> <p>&lt; 본조신설 2016.12.27. &gt;</p> <p>※ <b>현장수습조정관</b> :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화관법 규칙 제50조)</p>	<p>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p> <p>&lt; 신설 &gt;</p> <p>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p> <p>&lt; 신설 &gt;</p>



## 규칙 제50조의2,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및 해제) : 신설

###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가동중지표지**를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 발부 이전에 가동중지표지를 시설에 부착하여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서 또는 가동중지표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 **시설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신설>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호

#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시설	
가동중지 사유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부번호 : 호

# 가 동 중 지 표 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설 가동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	
가동중지 사유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현장수습조정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허가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가 동 중 지	16×16(mm)	고딕체
유역(지방)환경청장	6×6(mm)	"
나 머 지	4×4(mm)	"
※ 이표지는 ~	4×4(mm)	"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mm)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mm)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 13. 제49조(보고 및 검사)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49조(보고 및 검사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lt;개정 2016.12.27.&gt;</p> <p>1. ~ 6.</p> <p>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p> <p>8. ~ 11.</p> <p>②.....</p>	<p>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p> <p>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p> <p>&lt; 개정 &gt;</p> <p>②.....</p> <p>③.....</p>

# 14.

##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lt;개정 2016.12.2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5.</li> <li>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li> <li>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li> <li>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li> </ol> <p>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같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p> <p>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ol> <p>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신설 2017.5.30.&gt;</p>

## 15. 벌 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 10.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17. 12. 28 시행>

11.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2017. 12. 28 시행>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1. ~ 4.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17. 5. 30 시행>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17. 12. 28 시행>

5.

## 16. 벌칙 및 과태료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 3.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2017. 12. 28 시행>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 7.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2017. 12. 28 시행>

9. ~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2017. 12. 28 시행>

2. ~ 3.

③

1. 취급시설·장비 기준

가. ~ 라.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 자.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기술적 검토 업무를 지원 또는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운반업 또는 취급 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비고(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을 허가 받은 자
  -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개정 2017. 5. 30.>**

○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 및 수량기준 설정

(단위 :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CAS번호)	적용범위	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70	니켈 카르보닐(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3	트리플루오로보란(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4	트리클로로 붕소(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6	브롬(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7	세렌화 수소(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8	이소프렌(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79	1,1-디클로로에틸렌(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 철(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2	오불화 브롬(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3	염화 티오닐(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4	사염화 타이타늄(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6	비닐 에틸 에테르(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87	실란(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8	디실란(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9	디클로로실란(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90	트리클로로실란(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1	메틸디클로로실란(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75-7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7783-61-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비고

1. ~ 3.
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로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인접한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 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보관·저장수량” 이상인 경우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그 밖에 최대수량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위반 사업자

### 3. 신고요령

####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나.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 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

###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 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감 사 합 니 다